

창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0가단125460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1089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0가단125460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종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천

담당변호사 장승호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3.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 대표)는 2018. 1. 11. 피고와 사이에 ‘분체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부대작업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00원, 이행기 2018. 4. 30.(이후 2018. 5. 30.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고, 계약금 1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는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는 5.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불각서

원고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총 공사금액 칠억 원(₩700,000,000)에 대한 선급금 이억 원(₩200,000,000)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으며 공사완료 후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팔억 원(800,000,000)이 피고에게 입금되었을 때 공사금액 칠억 원(₩700,000,000)에서 선

금급 (₩200,000,000)을 제외한 오억 원(₩500,000,000)은 피고가 소유하고 나머지 삼억 원(₩300,000,000)은 원고에게 지불한다.

라.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며, 피고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을 임의반환 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7.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F 등부 2018년 제947호로 공증을 받았다.

계약해지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2018. 1. 11.자 하도급계약(분체도장 설비제작 및 설치부대 작업 일체)에 대하여 쌍방 모두 다음과 같은 계약해지에 합의한다.

- 다음 -

1) 위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하여 수령한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해제 후 피고가 반환 하되 피고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 원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도 인지하다시피 피고는 현재 위 1)항의 금액을 일시에 전액 반환할 재무적 상황이 아니므로, 피고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상환한다.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나 G(주)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D(주)로부터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아,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상환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 해제함에 동의하고 위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민, 형사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는 2018. 7. 15. D에, D가 피고로부터 165,000,000원을 수령하고도 해당 분체도장 설비의 제작에 일체 착수하지 않았고, 2018. 6. 27.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은 약 70% 수준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피고가 D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조건에 따른 이행이 있을 때까지 피고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제소 특약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부제소특약 조항을 두는 것은 그러한 합의와 동시에 그 합의에 따른 이행까지 완료하고 더 이상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를 남겨 두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키는 경우이거나 채권자가 굳이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계나 담보권 행사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의 특별한 신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회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로 행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6984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에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 해제함에 동의하고 위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민, 형사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채무의 내용과 조건, 범위를 확정하여 장래 이행할 것을 다짐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즈음에 위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남겨둔 것도 아니고, 그 밖에 원·피고가 소송을 회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는 피고의 채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만을 이행하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제소 특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금 중 피고가 D로부터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2.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되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D로부터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D에게 계약금으로 1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즈음 이 사건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는데 D를 압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H 경남울산지사의 감정평가사가 2018. 7. 6.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2018. 7. 13.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성조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양 사가 위 하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약해제에 대하여 협의하게 됨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양 사 간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제 및 대금 반환 등을 처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라고 답한 점, ② 피고는 2018. 6. 30.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하고, 2018. 7.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가 2018. 7. 15. D에 "해당 설비의 공정율은 .. 원하도급계약 해제통보 시점에서 약 70%에 불과하였고 최근 2018. 7. 6. E에서 진행하였던 해당 설비의 분체도장 자동부쓰 시운전 결과, 발주 당시의 공사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결과치에 완전히 미달하였기 때문에 해당 설비는 C이 의도한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새롭게 설계 및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단지 D를 압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반환한다는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서에 계약해제를 사유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가 작성된 후인 2018. 7.경 대출심사를 위해 원고 사업장에 방문하여 감정을 하고 기성조사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즈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대표인 I에게 2018. 3. 19. 31,000,000원, 2018. 4. 23. 72,219,000원, 합계 103,219,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8. 6. 30.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취소한 후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219,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 제1항에는 "피고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 원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